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82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윤진일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가산세 6,38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17.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 D단체에 'D단체(회장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0. 1. 부터 무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무료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D단체는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라. D단체는 아래와 같은 정관을 갖추고, 회장 E을 대표자로 하여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D단체 정관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D단체(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F을 통하여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친교, F 신앙활동 및 F 포도의 활성화 사업 등을 한다.

제4조(소속) 본 회의 소속은 원고에 속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②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회원만 의결권을 가진다.

1. 준회원: F 4과정까지의 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F 5과정 이상의 회원으로 D단체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정회원은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업무의결기구로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 2인 이내, 5. 감사 1인, 6. 여성회 및 청년회 회장. 7. 본회의 도움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산하 기관장은 당연직 임원이 되며, 산하 기관장이라 함은 본회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특별한 목적에 의한 부설기구를 일컫는다.

제18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

5. 산하기관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승인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 회계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본회 및 산하기관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제30조(총유) 본회의 모든 재산은 회원들의 총유로 하며 그 구성원(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본회의 재정은 보시금 및 참회 실비(회비)로 충당한다.

제33조(채무부담 등)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제34조(부동산 처분 등) 부동산을 처분(임대, 담보 설정 등 포함)할 때에는 총회 결의를 요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할 경우 총회 결의를 요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원고에 귀속된다.

부칙

제1조(준거규정)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관을 따른다.

마.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가산세 6,388,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래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종교활동을 위한 목적에서 D단체로 하여금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바, 위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규정은 취득한 재산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 위탁 등으로 제3자가 사용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그 사용 주체를 '소유자'로 한정하여 취득세 면제가 인정되는 범위를 개정 전보다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주체는 원고가 아닌 D단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바로 이 사건 승낙서를 작성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D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D단체는 독자적인 정관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대표자 및 임원,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고, 재정 확보 및 회계 또한 원고와 별도로 이루어지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기도 한바, 원고의 하부조직이 아닌 원고와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의 취지 참조).

다) D단체가 원고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상 D단체의 사용을 곧 원고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D단체의 사용이 원고의 사용이라면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한다. 끝.